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훈계요구·통보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미이행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남구

훈계대상자 ① 광주광역시 북구 ○○과 지방○○○○ ○○

② 광주광역시 서구 ○○과 지방○○○○○○○○ ○○○

③ 광주광역시 남구 ○○과 지방○○○○○○ ○○○

내 용

지방○○○○ ○○는 2016. 7. 18.부터 현재까지, 지방○○○○○○○○ ○○  
○는 2016. 1. 21.부터 현재까지, 지방○○○○○ ○○○은 2016. 1. 21.부터 2017.  
7. 5.까지, 각각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남구 ○○과에서 국토교통부 등1)으로부  
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의 명단을 통보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sup>2)</sup>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  
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는 국토교통부, 타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센터 등에서 시·  
도 및 시·군으로 통보  
2)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부터 4  
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

보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sup>3)</sup>는 건설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별표7]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건설업자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sup>4)</sup>를 부과<sup>5)</sup>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북구 ○○과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업체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북구 ○○과에서는 2016. 11. 7.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대표자 ○○○, 시설물유지관리업)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

---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시정명령·지시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 시·도에서는 조례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대한 권한은 해당 시·군으로 위임

4)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공사완료일 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횡수별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 시·도에서는 조례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대한 권한은 해당 시·군으로 위임

대장을 미통보한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서 지적되자 2017. 9. 28.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렇듯 광주광역시 북구 등 3개 시·군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한 혐의로 통보받은 71건(50개 업체)<sup>6)</sup>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서 지적되자 과태료 부과 통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 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서구청장, 남구청장은**

**[훈계]** 위 사람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한 혐의로 통보받은 71건(50개 업체)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행정처분 등을 위한 절차를 각각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6) 북구 52건(38개 업체), 서구 13건(11개 업체), 남구 6건(1개 업체)